

## 2. 정신건강통합센터 설치 관련 예산전용 보고

---

### 사업근거

- 지방재정법 제49조(예산의 전용),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(행정안전부)
- 정신건강통합센터 설치관련 예산 전용 계획(시민건강국, '21.7.19.)

###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'21. 9. ~ (신규 민간위탁)
- 설치근거 :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(정신재활시설의 설치·운영)
- 사업내용 : 정신재활시설 운영 및 정신질환자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등
- 소요예산 : 2,657,417천원(전액 시비)

### 예산전용(변경) 사유

- 지역사회 정신질환자를 위한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통합센터 신규 설치와 관련하여 기존 보조사업에서 민간전문기관(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 등)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관련 예산을 전용 및 변경 사용하고자 함
  - 센터운영비 등 :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→ 민간위탁금 및 민간위탁사업비
  - 시설 임차료(보증금) : 민간자본사업보조(자체재원) → 기타자본이전
  - 시설 임차료(월세) :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→ 사무관리비 등

□ 예산전용 내역('21.7.20.)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			예산액	변경요구액		변경 후 예산액	비고
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편성목	통계목		증	감		
공공보건·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	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 서비스 강화	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	민간이전 (307)	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(10)	21,308,402	-	1,657,417	19,650,985	전용 및 변경사용
			민간자본이전 (402)	민간자본사업보조 (자체재원)(01)	1,000,000	-	1,000,000	-	변경사용
			일반운영비 (201)	사무관리비 (01)	10,000	205,000	-	215,000	전용
			민간이전 (307)	민간위탁금 (05)	-	782,417	-	782,417	변경사용
			민간자본이전 (402)	민간위탁사업비 (03)	-	680,000	-	680,000	전용 및 변경사용
			기타자본이전 (406)	기타자본이전 (01)	-	990,000	-	990,000	변경사용